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7
----------	------

제출년월일 : 2010.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가.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이자보조 신청을 위한 별지서식을 규칙에 따라 정하고 삭제함

##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공단법 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자신청 등 행정절차를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규칙에 따로 정하고 삭제함

##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1부.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한국환경공단법”으로,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용자(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용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용자(이하 “용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사설을 설치하려는 자
  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사설을 설치하려는 자
- ②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융자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u>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시설의 용자(이하 “용자금”이라 한다)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한국환경공단법</u>」 ----- ----- <u>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시설의 용자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u>----- ----- ----- -----.</p>
<p>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보조금은 <u>용자금을 지원받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에 한한다.</u></p>	<p>제2조(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u>한국환경공단</u>의 <u>환경개선자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 중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용자(이하 “용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에 한한다.</u></p>
<p>1. 「<u>대기환경보전법</u>」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p>	<p>1. 「<u>대기환경보전법</u>」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

현행	개정안
<p>2.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p>
<p>3.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p>	<p>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p>	<p>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
<p>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p>	<p>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
<p>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용자금을 받은 경우, 용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용자금을 받은 경우, 용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현행	개정안
<p>제3조(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lt;신설&gt;</p> <p>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환경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p> <p>③ 시장은 위원회의 보조금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조(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p> <p>①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용자승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종전의 1항과 같음)</p> <p>③(종전의 2항과 같음)</p> <p>④(종전의 3항과 같음)</p>
<p>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p> <p>-----</p> <p>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한국환경공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칙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대기환경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li> <li>○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li> <li>○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li> <li>○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li> <li>○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별 첨 ”</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한국환경공단법

부칙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공단은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명의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단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공동 방지지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지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지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지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사업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①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